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종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1일

3. 제안이유

전통시장 화재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자율소방대 구성, 등록,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 및 운영협의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마. 자율소방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자율소방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도지사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2020년도 이후 충청북도 내 전통시장에서는 증평장뜰시장('20.10.27.), 청주육거리종합시장('21.4.14.), 괴산전통시장('22.1.13.), 청주원마루시장('22.5.31.) 등 화재피해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노후화된 전기시설과 점포들이 밀집해 대형화재 발생이 가능하여 적극적 소방안전대책이 요구됨.
- 따라서 전통시장 내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를 예방하고 상인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는 상인회의 사업 중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명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로 법령의 범위에서 “자율소방대”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총 11개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자율소방대의 구성, 등록, 지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율소방대”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자율소방대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율소방대의 구성, 등록,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도모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는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 지도·감독 등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에 실정에 맞는 자율소방대의 화재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4. 4. 12.~'24. 4. 1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

과, 충청북도 내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여 전통시장 내에서 발생가능한 화재를 예방하고 상인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관할 소방서장의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율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함.